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6. 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국가정책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돌봄 전담 조직 신설

- 명칭 변경 : (기존) 복지정책과 ⇒ (변경) 통합돌봄과

나.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2)

- 명 칭 변경 : (기존)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 ⇒ (변경) 진건건강생활지원센터
 - 소재지 변경 : (기존) 다산중앙로 7(다산동) ⇒ (변경) 진건오남로 41-19(진건읍)
 - 관할구역 변경 : (기존) 다산동 전 지역 ⇒ (변경) 진건읍, 퇴계원읍 전 지역
-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 설치 제외”가 규정되어 있어 이전 결정 (남양주보건소 다산동 소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정책기획과

라. 입법예고 : 2026. 2. 5. ~ 2025. 2. 12.(7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 명칭 변경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복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이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부서 명칭 변경의 경우 국가 복지정책의 방향인 통합돌봄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적 시정 조치가 상당 기간 지연된 측면이 있는바, 향후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7.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외한다) 밑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부조직(과는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1.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 행정개선 등에 관한 업무
2. 정책의 홍보,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 공직기강 확립,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업무
4.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행정기구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후속 조치는 조례 개정 이후 부서별 추진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비용발생 요인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변경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3조제2항제2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김 병 기